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10
----------	-----

2024. 3.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3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제7조)
- 적극행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반영(안 제6조)
- 위원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22.12.27.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영의 시행일이 2022년 12월 27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

조문	개정사항	비고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처음 용어에 약칭표기
제5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처음 용어에 약칭표기
제6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 위원회의 회의는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
제6조제1항	연2회 → 연 [✓] 2회	띄어쓰기
제7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위원장	약칭표기 삭제

- 안 제6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 본 영의 입법체계에 맞춰 기존의 제3항을 제2항으로,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의 '재적의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본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의 명칭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정(2021.4.9.)됨에 따라 제7조의 위원회 명칭도 변경되었어야 하나, 개정 당시 미반영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지원위원회 → (개정안) 위원회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사항

2019.12.13. 제정(조례 제4339호)	2021.4.9. 일부개정(조례 제 4520호)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안 제10조제5호는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 설></u>	제10조(위원의 해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을 당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재적의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u>위원장</u>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u>위원</u>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p>	<p>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u>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 -----.</p> <p>③ ----- <u>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u> ----- ----- ----- -----.</p>

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

----- 연 2회 -----
-----.

③ ----- 제2항에 따른 구성원 -----

-----.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지
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
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

관련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